강간(인정된죄명:준강간)

[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. 2. 6. 2017고99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군 검 사】대위(진) 이연용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유성권 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【이유】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